(제73회 - 산업건설위 부록)

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안

의 안 번 호	69

제출일자 : 2002. 12.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사유

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1. 07. 06일자로 수립·고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에 기타시설용지(농업 및 공장용지)를 다중이용 체육공원 시설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용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반영 요청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 요청내용

지 구 명	당초(고시)	변 경	비 고
신촌Ⅱ지구	기타시설용지 (농업및공장용지)	체육시설 용 지	-매립예정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다중 종합체육 시설 조성 및 주민숙원 해소

3. 근거법령

○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

(제73회 - 산업건설위 부록)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에 따른 의회 의견 요청

□ 배　　경

○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. 7. 6일자로 수립·고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에 기타 시설용지(농업 및 공장용지)를 다중이용 체육공원시설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용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반영 요청하기 위함.

□ 의회의견 요청 근거

○ 공유수면매립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첨부·

□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요청 내용

○ 요청인 : 사천시장

○ 매립요청지의 위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

○ 매립요청지의 규모 : 0.102000㎢

○ 매립목적(변경)

지구명	당초(고시)	변　경	비　　고
신촌Ⅱ지구	기타시설용지 (농업및공업용지)	체육시설 용　　지	· 매립예정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다중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주민숙원 해소

□ 근거법령 :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